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2020. 10.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국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20-150
- 나. 제 안 자: 김성희 의원 외 6명
- 다. 제안일자: 2020년 10월 20일(화)
- 라. 회부일자: 2020년 10월 20일(화)

2. 제안사유

마포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으로 구청장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 포함)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토록 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민법」 제48조
- 나. 입법예고: 2020. 10. 16. ~ 10. 21.(제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에서 출연한 ‘마포문화재단’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마포문화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이므로 구청장이 재단 소유의 재산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참고자료 I】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현황

○ 서울시 자치구 중 해당 조례 제정 : 22개 구

※ 조례 미제정 : 용산구, 서대문구, 강서구

-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조항 존재 : 19개 구

- 해당 조항 삭제 : 2개 구

· 중구 :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법제처) 수용에 따라 삭제<2018.12.28.>

· 강남구 : 문화재단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삭제 <2015.07.10.>

연번	자치구	소관부서	규정사항	비고
1	종로구	문화과	제2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중구	문화관광과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삭제 <2018. 12. 28.>	
3	용산구			조례 미제정
4	성동구	문화체육과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5	광진구	문화체육과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중랑구	문화관광과	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번	자치구	소관부서	규정사항	비고
8	성북구	문화체육과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강북구	문화관광체육과	규정없음	
10	도봉구	문화체육과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1	노원구	문화예술과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2	은평구	문화관광과	제15조(공유재산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3	서대문구			조례 미제정
14	마포구	기획예산과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양천구	문화체육과	제2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6	강서구			조례 미제정
17	구로구	문화관광과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 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금천구	문화체육과	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번	자치구	소관부서	규정사항	비고
19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p>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삭제 2020. 9. 17.></p>	
20	동작구	체육문화과	<p>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p>	
21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	<p>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게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p>	
22	서초구	문화관광과	<p>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p>	
23	강남구	문화체육과	<p>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삭제 2015. 07. 10.></p>	
24	송파구	문화체육과	<p>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25	강동구	문화예술과	<p>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참고자료Ⅱ】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